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-44호

고용창출장려금(특별고용촉진장려금) 회수처분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미준수를 이유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고, 사업장은 폐업 상태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3. 5. 1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



1. 건 명 : 고용창출장려금(특별고용촉진장려금) 회수 결정 안내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,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 참고
4. 공고기간 : 2023. 5. 1. ~ 2023. 5. 15.(공고일로부터 15일간)
5.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이태희(Tel 02-2004-7370)에게 연락 바랍니다.

[붙임]

고용창출장려금(특별고용촉진장려금) 회수 결정 안내 관련 공시송달 명단

[공고기간 : 2023. 5. 1. ~ 2023. 5. 15.]

연번	사업장명 (사업장관리번호)	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1	주식회사제이엘*** (JL*****) (37*-8*-0187*-0) 대표자명: 정**	○ 처분의 제목: 고용창출장려금(특별고용촉진장려금) 회수 결정 안내 ○ 당사자 명칭: 주식회사제이엘*** (대표자명: 정**) ○ 당사자 주소: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***, 지하*층(장안동) ○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- 고용창출장려금(특별고용촉진장려금) 대상자 ‘김**’의 감원방지기간인 2021.5.15.~2021.12.13.(채용일 2021.6.14.) 중에 ‘이**(77****)’ 등 6인이 2021.11.1. ‘[23]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’로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원방지기간을 미준수 ○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- 처분 내용: 고용창출장려금(특별고용촉진장려금) 2,000,000원 회수 -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,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	폐문부재, 사업장 폐업